

「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5. . .
제출자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고,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·명확화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○ 안 제1조 수정

• 당 초:

이 조례는 ~~조선 성리학의 산실인 구마사에 건립된~~ 구미성리학 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성리학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• 변 경:

이 조례는 구미성리학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성리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·발전시키고 지역 성리학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향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「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
같이 수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선 성리학의 산실인 구미시에 건립된 구미성리학역사
관의 관리 및” 을 “구미성리학역사관의 관리와” 로, “규정하여”
를 “규정함으로써” 로, “전통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고 지역” 을
“전통을 계승·발전시키고 지역 성리학” 으로, “향유 증진” 을
“향유” 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성리학역사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조선 성리학의 산실인 구미시에 건립된 구미성리학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성리학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구미성리학역사관의 관리와 -----</u> ----- ----- ----- <u>규정함으</u> <u>로써----- 전</u> <u>통을 계승·발전시</u> <u>키고 지역 성리학--</u> ----- <u>향</u> <u>유-----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1. “구미성리학역사관” (이하 “역사관” 라 한다)이란 <u>금오산로 336-13 및 336-29 일원에 조성한 시설을 말하며, 시설</u></p>	<p>1. ----- -----<u>이</u> <u>라 한다----- 구미</u> <u>시 금오산로 ----</u> ----- ----- <u>시설</u> <u>현황-----</u>.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현황은 별표 1과 같다.</p>		
<p>2.·3. (생략)</p>	<p>2.·3. (현행과 같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4. “전시물”이란 이용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역사관에 상설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자료를 말한다.</p>	<p>4. ----- ----- ----- 일정 기 간 ----- -----.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5. (생략)</p>	<p>5. (현행과 같음)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3조(업무) 역사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제3조(업무) ----- ----- -----.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1. ~ 4. (생략)</p>	<p>1. ~ 4. (현행과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5. 역사관 홍보를 위한 <u>홍보상품</u> 및 기념품의 제작·판매</p>	<p>5. ----- - <u>홍보 상품</u> ---- -----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6. 그 밖에 역사관의 <u>설립목적</u>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	<p>6. ----- <u>설립 목적</u>----- ----- --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제4조(개관 및 휴관 일) ① (생략)	제4조(개관 및 휴관 일) ①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.	(개정안과 같음)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3. 매주 월요일. 다만, 월요일이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<u>그 다음</u> 첫 번째 비공휴일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다음</u> ----- -----	(개정안과 같음)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제6조(관람료) ① (생략)	제6조(관람료) ①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역사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무료</u> 관람을 하도록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무</u> <u>료</u> <u>관람</u> ----- -----.	(개정안과 같음)

제11조(교육·체험프로그램 운영) ① 시장은 구미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·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·체험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, 프로그램의 종류,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자원봉사자) ① 시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성별을 고려하여 모집·운영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(생략)

제11조(교육·체험프로그램 운영) ① --- 구미시의 역사·문화-----

---- 교육·체험 프로그램-----

② 교육·체험 프로그램 -----

-----.

제12조(자원봉사자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<p>2. <u>교육·체험프로</u> <u>그램</u> 안내 및 보 조</p>	<p>2. <u>교육·체험 프로</u> <u>그램</u> -----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3조(위탁) ① (생략)</p>	<p>제13조(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② 제1항에 따른 위 탁기간은 5년 이내 로 하되, <u>운영실적</u> 및 관리능력을 평가 하여 구미성리학역 사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 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연장</u> <u>기간</u>은 5년 이내로 한다.</p>	<p>② ----- <u>위탁</u> <u>기간</u>----- -- <u>운영 실적</u> ---- ----- ----- ----- <u>위탁 기간</u>----- -- . ----- <u>연장 기</u> <u>간</u>----- -.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4조(수탁자 선정)</p>	<p>제14조(수탁자 선정)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① 역사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자 하는 자는 <u>별지</u> <u>제1호 서식</u>의 위탁 관리·운영 신청서</p>	<p>① ----- ----- ----- ---- <u>별지 제1호서</u> <u>식</u>----- -----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를 위탁운영 할 경
우에는 수탁자와 다
음 각 호의 내용이
포함된 위·수탁 협
약을 체결하여야 한
다.

1. (생략)
2. 위탁기간
3. (생략)
4. 시설의 안전관리
에 관한 사항

5. (생략)
② 제1항에 따른 협
약서에는 위탁기
간, 수탁자의 의무,
예산지원에 관한 사
항, 협약내용을 위
반하였을 경우 의무
이행 등 필요한 사
항이 포함되어야 한
다.

제19조(위탁의 취소)
시장은 수탁자가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위탁을 취소할

탁운영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 (개정안과 같음)
2. 위탁 기간 (개정안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 (개정안과 같음)
4. ---- 안전 관리- (개정안과 같음)

5. (현행과 같음) (개정안과 같음)
② ----- (개정안과 같음)
----- 위탁 기간---
----- 예산 지
원----- 협약
내용-----
- 의무 이행 -----

-----.

제19조(위탁의 취소) (개정안과 같음)

-----.

수 있다.

1.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따른 수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

1. ----- 관계 규정 (개정안과 같음)
----- 수탁
조건 및 계약 내
용-----

2. (생략)

2. (현행과 같음) (개정안과 같음)

3.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----- 운 (개정안과 같음)
영 능력-----

4.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따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

4. ----- (개정안과 같음)
----- 내부
방침-----

5. (생략)

5. (현행과 같음) (개정안과 같음)

6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6. ----- 위 (개정안과 같음)
탁운영할 -----

제21조(기능) 위원회는 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.

제21조(기능) ----- (개정안과 같음)

-----.

1. 역사관 운영과

1. ----- (개정안과 같음)

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략)

③ 당연직 위원은
역사관 담당부서의
국장이 되고, 위촉
직 위원은 구미시의
회 의원과 역사, 문
화, 관광, 박물관
등의 분야에 식견과
경험이 풍부한 사람
중에서 시장이 위촉
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③ -----
- 담당 부서-----

-.

제26조(간사) ① 위원
회의 원활한 운영을
위하여 간사 1명을
두며, 간사는 역사
관 담당부서의 과장
이 된다.

제26조(간사) ① ----

----- 담
당 부서-----
-.

(개정안과 같음)

② 간사는 회의가
개최된 때에는 회의
록을 작성·비치하
여야 한다.

② -----

작성하고 갖추어 두
어야 ----.

(개정안과 같음)

제28조(대관시설) 시
장은 역사관의 운영
에 지장이 없는 범
위에서 역사, 문화

제28조(대관시설) --

(개정안과 같음)

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·행사 등(이하 “행사”라 한다)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백운재

4. (생략)

제29조(대관신청 및 허가) ① 역사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하되, 구미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대관신청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 (개정안과 같음)

3. 풍류관 (개정안과 같음)

4. (현행과 같음) (개정안과 같음)

제29조(대관신청 및 허가) ① ----- (개정안과 같음)

허가) ① -----
----- 별지 제2호 서식-----
-----.

② ----- (개정안과 같음)

대관 여부-----

-----.

③ ----- (개정안과 같음)

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, 대관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대관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⑤ 대관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대관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제30조(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
----- 별지 제3호서식-----

-.

④ ----- (개정안과 같음)

----- 별지 제4호서식-----

-.

⑤ ----- (개정안과 같음)

----- 별지 제5호서식-----

-.

⑥ (현행과 같음) (개정안과 같음)
제30조(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) ① ---

--.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<p>1. 제29조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</p>	<p>1. ----- ----- 원 <u>상 회복</u>----- ----- -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2. <u>대관조건</u>을 위반하여 대관이 취소 또는 중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</p>	<p>2. <u>대관 조건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3.·4. (생략)</p>	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5. 정치적인 <u>집회행사와 상행위</u>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</p>	<p>5. ----- <u>집회 행사</u>----- ----- -----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6. (생략)</p>	<p>6. (현행과 같음)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